

강원특별자치도

주의·시정·개선

제 목 공가 등 휴가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병가·공가 등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 등¹⁾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²⁾을 공가로 승인하고,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정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다. 공가', '(2) 공가 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다)'에 따르면,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제11조³⁾에 따르면, 전일근무 또는 야간근무자가 다음날 교육·출장 등 공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부서의 장은 소방력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해당 근무자를 주간근무 또는 비번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이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원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개정·시행(2022.1.1.)됨에 따라서 기존 불명확한 문구, 모호한 표현 등을 보완하여 공가사용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하도록 함

3) 「구.강원도 소방공무원 근무지침」 제12조(2021.1.20.) *「강원도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3. 1. 20.개정)

이와 관련 소방청에서는 2020. 4.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후 2021. 8. 18.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경조사 특별휴가 적용 기준을 시달⁴⁾하면서,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조사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2021. 7. 15. 이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22. 2. 18.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적용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휴가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특별휴가의 종류를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고 기준을 재시달⁵⁾하였고, 기존 복무처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등을 고려하여 소급 적용을 자제하도록 시달하였다.

또한 특별휴가 중 임신검진휴가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라. 특별휴가', '(11) 임신검진휴가', '(가)'와 '(나)'에 따르면,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가가산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⁶⁾·정직·강등·직위해제 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에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등⁷⁾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소방청 소방정책과-6848(2021.8.18.)호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5)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30(2022.2.18.)호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적용 기준 알림」

6)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7)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2) 연가 일수의 가산'에 따르면,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⁸⁾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한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된 공무원(1년 미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⁹⁾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헌혈, 건강검진 등 공가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신청하였어야 했고, 결재권자는 공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승인하였어야 했으며, 2022. 2. 18. 이후 경조사 특별휴가를 사용 시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하여 특별휴가를 신청하여야 했고, 결재권자는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된 일수만큼 승인하였어야 했다.

또한 임신검진휴가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어야 했고,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직위해제·공로연수·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대기발령·연도 중 임용된 신규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가산하였어야 했다.

8)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공로퇴직연수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9)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가 신청 및 승인의 부적정

○○소방서(○○○○○○, ○○○○○○○○○)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인사발령, 교육출장 등 공가사유가 아님에도 총 3명이 공가를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공가사유가 아님에도 승인하였다.

나.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및 승인의 부적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와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차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비교표

구분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대상	일수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자녀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1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그런데 ○○소방서(○○○○○○, ○○○○○○○○○)에서는 강원도 조례 경조사

규정에는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경조사 휴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의 사유로 소방○ ○○○이 특별휴가를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경조사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에도 승인하였다.

다. 임신검진 특별휴가 사용의 부적정

감사대상 기간 중 임신검진휴가에 대하여 임신검진 사실자료¹⁰⁾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 소방☆ ☆☆☆는 총 10일 중 4일, 소방♡ ♡♡♡은 10일 중 1일을 임신검진 사실이 없음에도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연가 가산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소방♣ ♣♣♣는 정직 1개월의 징계사유로 연가 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법정연가일수에 연가 또는 병가 미사용을 사유로 연가를 가산하였다.

마. 헌혈에 따른 공가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소방서(○○○○○, ○○○○○○○○)에서는 헌혈에 따른 공가를 신청 및 승인하면서 소방◇ ◇◇◇외 1명은 소방서 내 단체헌혈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는 등 헌혈에 필요한 소요시간¹¹⁾을 초과하여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헌혈에 따른 공가사용에 직접 필요한 시간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10) 진료비영수증 및 통원확인서 등

11) 전혈 약10분~15분, 혈장헌혈 약30~40분, 성분헌혈 약1시간~1시간30분 /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출처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20.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임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출산일까지¹²⁾ 약 8개월간 임신검
진을 목적으로 총 10회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였고, 그중 총 4회인 2021. 9.
13., 2021. 10. 25., 2021. 11. 26., 2021. 12. 20.에 임신검진의 목적으로 임신검진
휴가를 신청한 후, 독감예방접종·백일해 접종·제대혈상당·신체계측을 위해 방
문하는 등 임신검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소방△ △△△은 2022. 5. 11.부터 2023. 2. 19.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임신사실을 안 날로부터 출산일까지¹³⁾ 약 8개월간 임신검진을 목적
으로 총 10회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하였고, 그중 총 1회인 2022. 9. 23.에 임신
검진의 목적으로 임신검진휴가를 신청한 후, 귀가하여 안정을 취하는 등 임신검
진이 아닌 다른 사유로 임신검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
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2) 2021. 5. 20.(임신확인일) ~ 2022. 1. 8.(출산일)

13) 2022. 7. 27.(임신확인일) ~ 2023. 3. 17.(출산일)

- ② **[시정]** 공가·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연가가산 등 복무관리가 잘못되어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11,090원 및 연가보상비 548,980원을 회수하여 도금고로 세입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당한 휴가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개선]** 헌혈에 따른 공가는 헌혈장소 및 방법, 개인별 회복시간 등에 따라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인적·물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헌혈에 필요한 시간단위로 공가를 승인하여 행정력의 공백과 불필요한 공가 사용이 방지되도록 복무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시정

제 목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 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청 소속 직원과 도내 중소기업 직원의 안전한 자녀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보육 기관에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어린이집 위탁 운영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총 계	정부지원보육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기타
2021	390,830	121,458	154,879	99,471	15,022
2022	635,164	168,052	281,381	120,295	65,436
2023	668,717	186,850	291,119	117,776	72,972
2024	750,889	202,372	301,000	136,255	111,262

◇ 위탁업체: ○○○○ ○○○○○○○(○○ ○○○ ○○○○○○○○ ○○)
◇ 위탁기간: (최초) '21. 3. 2. ~ '24. 2. 28. / (재위탁) '24. 3. 1. ~ '27. 2. 28.(3년)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기관의 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가족외의 사람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탁 운영 등 소관 복지시설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서 ○○어린이집 급여 지급기준」 및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25일에 지급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외 예산 내에서 자격수당,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며, 「2024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2. 나. 1) 봉급월액」에 따르면,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상향지급(성과상여금 포함),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수상향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계약·회계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21조·제22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고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이 임면하며, 지출은 위의 규정에 의해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고,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어린이집 사무편람 작성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수 있고,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관·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원장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 및 세출의 내용과 산출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세입 및 세출을 담당하는 사람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예산 중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교직원 보수상향지급(성과상여금 포함),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있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였어야 했고, 그렇게 사용하고도 남은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수탁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기 전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였어야 했고, 사업 연도 매 분기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결산서를 제출받았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했으며, 매 년 1회 지도점검 시에 위탁운영 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여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어야 했고, ○○어린이집에서 수입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및 계약업무에 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독립적인 자로 선발토록 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지도 감독하였어야 했으며, 지출결의서 및 세부증빙자료들도 면밀히 확인하여 관리·감독하였어야 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어린이집에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구분된 사무편람 작성을 안내하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했고, ○○어린이집의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세입 및 세출을 담당하는 자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회계사고에 대비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어린이집 예산 운영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2023년 ○○어린이집 잔여 예산 44,411천 원이 발생하여 보수 상향,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균형있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했음에도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사용이나 예산의 이월 없이 보수상향예산으로 잔여예산의 50% 넘게 지급하도록 승인하였다.

나. ○○어린이집 계약·회계관리 및 지도 감독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 회계감사없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매년 결산서를 제

출발았다.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증빙서를 표본확인 한 바 ○○어린이집에서 세입 및 세출 업무와 관련 수입원·지출원·계약담당자·회계담당자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 1인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맡아서 처리하여 지출에 대한 계획 및 결의문서, 계약서, 검수조서 등 증빙서류가 미비된 채 보관 및 관리되었고,

해당기간 중 ○○어린이집 수입·지출부를 검토한 바 총 563건의 지출 중 46건의 지출증빙자료들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아래 [표5] 와 같이 그 중 11건은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았음에도 5일을 초과해서 지출하였고, 32건은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후에 업체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서 관리하였으며, 3건은 해당 업체로부터 지출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지출되었음에도, ○○소방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문서로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의 결산내역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세부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들은 확인하지 않았다.

[표 5] ○○어린이집 지출증빙자료 요약 현황(2023.7.~12.)

(단위: 건)

2023년 총 계	지출증빙자료를 미리 받고 5일을 넘겨서 지급				계좌이체를 먼저 하고 증빙자료를 나중에 받음				증빙자료 없음
	소계	6~10일	11~20일	21~30일	소계	1~10일	11~20일	21~30일	-
46	11	9	1	1	32	25	4	3	3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다. ○○어린이집 사무편람 미작성 및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방서(○○○○○○)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수탁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무편람의 작성 및 승인신청을 지시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에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사무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재정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지시를 하지 않았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2. 1. 9.까지, 소방♡ ♡♡♡은 2022. 1. 10.부터 2023. 7. 2.까지, 소방♣ ♣♣♣은 2023. 7. 3.부터 현재까지 ○○○○○○
○으로,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1. 16.까지, 소방◎ ◎◎◎는 2022. 1. 17.부터 2023. 1. 3.까지, 소방△ △△△은 2023. 1. 4.부터 현재까지 ○
○○○○○○으로, 소방☆ ☆☆☆는 2020. 12. 18.부터 2021. 8. 29.까지, 소방♡ ♡
♡♡은 2021. 8. 30.부터 2022. 7. 10.까지, 소방♣ ♣♣♣은 2022. 7. 11.부터 감
사일 현재까지 실무담당자로 ○○어린이집 운영사항을 관리·감독하였다.

위 행위자는 2021. 3. 2.부터 ○○○○○○○○○○○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관
리·감독을 시작하였는데 2023년말 잔여예산이 발생하였을 때 보수상향, 교재교
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해 균형있게 예산을 사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보수상향예산으로 잔여예산의 50% 넘게 지급하도록 승인하였다.

그리고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
회계감사없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분기별로 사업비 결산서를 받아 결산내역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세부지출에 대한 계약서류 및 지출증빙자료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무편람의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도 가입을 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도내 소방서 중 최초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이었던 점, 인사이동으로 실무자 및 팀장이 1년마다 교체된 점, 방대한 어린이집 법령과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찬하기는 힘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문책보다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 ① **[부서경고]** ○○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 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부서경고」 처분하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시정]**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시고, 수탁기관인 ○○어린이집의 사무편람 작성을 지시하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편람을 비치하시기 바라며, 국고지원금 및 보육료 전반의 세입·세출사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정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2021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금, 급여공제금, 반납금 및 세입금 등을 운용하기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 및 보통예금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표 1]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집행 현황

(단위: 원)

연 도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		비고
	집행건수	금 액	집행건수	금 액	
합 계	61	2,740,799,210	182	2,879,872,310	
2021	17	758,998,360	50	457,279,630	
2022	29	818,027,230	65	1,023,428,310	
2023	13	1,021,113,000	52	1,151,038,160	
2024 ~ 현재	2	142,660,620	15	248,126,210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 대통령령¹⁴⁾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과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하며, 출납원은 납입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

14)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납부를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보통예금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으며,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자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같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로 즉시이체하여야 했고, 금액의 성격을 보관금과 잡종금으로 구분하고 e-호조 시스템으로 납입고지·수납등록을 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하였어야 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할 때는 e-호조 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의 결재를 받고 반환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했고, 반환 영수증 및 지출 증거서류들을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증거서류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및 지출 집행 부적정

○○소방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를 운용하면서 총 182건의 집행건수 중 150건에 해당하는 금액(770,444천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공금예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은 채, 세입세출외현금 보통예금계좌에서 바로 출금하여 반납 및 환급하였다. 이 중 52건에 해당하는 금액(163,720천 원)은 세입세출외현금지출 계획 및 결의문서, 세입세출외현금지출 고지서 및 납부영수증을 이용한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여 보관금에 대한 회계사고 위험을 초래하였다.

나. 세입세출외현금 증거서류 보존 소홀

○○소방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세입세출외현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지출서류 및 증거서류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편철하지 않고 관리하였으며, 특히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시 공금예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은 150건에 대하여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등 보존 관리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같이 운영하게 한 취지는 현재 소방서의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는 농협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되고 있고, 농협 공금계좌로의 입금은 농협계좌에서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 다른 은행(신한, 기업 등)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로 바로 입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에 별도의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를 개설하여 보통계좌로 입금된 보관금 등을 공금계좌로 즉시이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소방☆ ☆☆☆은 2021. 3. 1.부터 2021. 10. 26.까지, 2021. 12. 14.부터 2022. 11. 16.까지 ○○소방서 ○○○○○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담당자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운영하면서 보통계좌로 들어온 현금 중 바디캠 액정파손 수리비 보험료 환급금 등 24건에 대하여 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등록 및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

또한 소방♡ ♡♡♡은 2021. 10. 27.부터 2021. 12. 13.까지 ○○소방서 ○○○○○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담당자로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운영하면서 보통계좌로 들어온 현금 중 관내출장여비 반납금 등 9건에 대하여 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등록 및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

그리고 소방♣ ♣♣♣은 2022. 11. 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담당자로 공금계좌와 보통계좌를 운영하면서 보통계좌로 들어온 현금 중 전출자 방호활동비 반납금 등 19건에 대하여 공금계좌로 즉시이체하지 않았고,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납등록 및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하였다.

한편 세입세출외현금이 아닌 세입금에 대한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 불용차량 매각대금이나 과태료 등 세입금을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로 받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공금계좌로 즉시이체 및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반환하여 회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도 세입결의 및 세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수납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어 하나의 금액이 들어왔을 때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상 불편함이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회계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본부 금고는 신한은행이고 21개 관서들은 농협을 금고로 지정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보통계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 행정업무처리상 세입금만을 위한 통장은 가지고 있지 않는 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세입세출외현금 업무연찬이 미흡했던 점 등 관련자의 신분상 문책보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권고” 처분사유¹⁵⁾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소방서장은

[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관련 문서 및 증빙서류를 편철하여 정리하고,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공금계좌와 보통계좌의 사용방법 및 계좌개설의 취지 및 절차 등에 대한 직원교육

15) 소방감사담당관-○○○○호 「2024년 제○회 소방감사감찰 심의회 결과 보고」 및 소방감사담당관-○○○○호 「2024년 ○○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통보」와 관련,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관리 개선 지침을 마련중이므로, 금번 감사심의회에서 동일한 “권고”사항을 처분에서 제외함

제조소등	887	-	190	121	11	2	56	697	22	206	134	73	245	17
안전관리자	481	-	178	116	11	2	49	303	21	106	105	57	-	14

※ 자료: ○○소방서 감사자료 발취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¹⁶⁾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 자격
저장소	1. 옥내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별표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4. 지하탱크 저장소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급소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별표6] 재구성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에서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면 민원처리부에 기록한 후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였어야 했고, 관계인이 신고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선임신고서를 수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및 처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2021. 12. 13. ○○○○○○ 일반취급소 관계인이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미달자 신고 수리

○○소방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 처리결과를 확인 한 바, ○○소방서(○○·○○○○○○○○)에서는 일반취급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이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수리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4. 1. 2.까지 ○○소방서 ○○○○○○○○ ○○에서 근무하면서, ○○○○○○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이 2021. 12. 1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채 방치하였으며, 2021. 8. 18. ○○○○○○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

리자 선임신고서 수리 시에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수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방♡♡♡은 2024. 1. 9.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에 서 근무하면서, 2024. 3. 5. ○○○○○○○○ ○○○○○○○○(○○○) 일반취급소17)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없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 수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은 2020. 7. 2.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은 2024. 1. 3.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는 2021. 7. 5.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17) 터빈 발전기용 윤활유를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4류 제4석유류, 지정수량 35.4배)

○○○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옥내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7. 10.부터 현재까지○○소방서 ○○○○○○○○○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수리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로 적합하게 선임 신고되었는지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시정] ○○○○○○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처리하시고 ○○○○○○ 및 ○○○○○○○○ ○○○○○○○○(○○○)의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자격 부적합)에 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18)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입건19) 및 선임자격 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자²⁰)로 재선임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 시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가 적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소속직
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
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
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
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
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를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
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
령령(시행령 별표5)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
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②~⑥ 생략)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별표6)
19)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 및 7.~15. 생략)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관 련 자 ① ○○소방서 ○○○○ 소방○ ○○○
② ○○○○○○○○○○ ○○○○○○(前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⑤ ○○소방서 ○○○○○○ 소방○ ○○○○
⑥ ○○소방서 ○○○○ 소방○ ○○○○
⑦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 [표1] 과 같이 1,484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지상식	지하식	승하강식	저수조	급수탑	비상소화 장치
1,484	901	-	-	-	-	583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지리조사는 정밀조사 연2회(해빙기, 동절기)와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소방용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밀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이나 토사 등 장애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보고하였어야 했고, ○○소방서(○○○○○○)에서는 대체소방용수 지정 및 고장사실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관계기관에 수리나 이전 등을 요구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을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소방서(○○·○○·○○○○○○○○○○)의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총 96개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9개소(2021년 1개소, 2022년 3개소, 2023년 5개소)의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즉시 고장 사실 및 대체 소방용수시설을 지정하여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 보고한 소방용수시설의 소방용수조사부를 확인한 결과 2021. 8. 13. ○○시 중앙 배관 누수에 따른 보강 공사로 인해 ○○○○○호가 사용불가 상태여서 이와 연결된 ○○○○○○○○○○ 역시 사용불가 상태임에도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방용수조사부에 정상작동으로 작성하는 등 총 7개 소 대해 소방용수조사부 작성을 소홀히 하였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소홀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 화전 901개소 및 비상소화장치 58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호 소방용수시설이 가드레일 뒤쪽 토사에 매몰되어 있음에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는 2021. 1. 2.부터 2022. 1. 31.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1. 8. 13. 배관 보강공사로 고장발생 보고된 ○○○○ ○ 소화전이 2022. 11월 중(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소화전과 연결된 ○○ ○○○○○○○○ 비상소화장치에 대하여 2021년 10월·11월·12월 사용가능한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 ♡♡♡는 2022. 7.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2. 7. 29. 스펀들 고장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

○ 소화전이 2023. 2. 21.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2년 10월·11월 소방용수조사 부를 양호로 작성하였을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은 소방용수조사부를 누락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1. 3.까지 ○○○○○○○○○○○에 근무하면서, 2022. 10. 19. 스펀들 부식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3. 4월(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2. 12. 24.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 ◇◇◇은 2022. 8. 17.부터 2023. 3. 10.²¹⁾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2022. 10. 19. 스펀들 부식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3년 4월(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3. 1. 18.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3. 7. 9.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2023. 1. 18. 관로고장으로 상수도가 폐쇄되어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3년 6월 중(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소화전과 연결된 ○○○○○○○○○호 비상소화장치를 2023. 5. 23. 사용가능한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 △△△는 2021. 1. 2.부터 2023. 11. 5.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2023. 5. 24. 스펀들 고장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3년11월(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3. 9. 30.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 ◇◇◇은 2022. 7. 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2023. 3. 27. 스펀들 고장 및 주변공사로 소화전 임시폐

21) 2023.3.10. 의원면직

쇄 및 대체소화전 지정 등 고장발생 보고된 ○○○○○호 소화전이 2023년 7월 (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2023년 4월·5월·6월 소방용수조사부를 양호 및 사용가능으로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고,

소방☆ ☆☆☆은 2023. 7.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3. 7. 20. 스펀들 고장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 ○호 소화전이 2023년 10월 중(미회신) 수리 완료되었음에도 소화전과 연결된 ○○○○○○○○○호 비상소화장치를 2023. 8. 31. 사용가능한 것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방♡ ♡♡♡은 2023. 7.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4. 4. 30. ○○○○○호가 소방용수시설 몸통이 토사에 매몰되어 있고 소화전 보호틀 앞쪽으로 조경이 식재되어 사용에 장애가 심각함에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소방용수조사부를 작성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가. ○○소방서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 · ●●●● · △△△, 소방◇ ◇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토사 매몰이나 조경 식재 등 장애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장애가 예상

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지자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방서 ○○○○○○○○ 소속직원에게 관련 규정 및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소방서장은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